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7. 11 선고 2023가단1084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김상국
변 론 종 결 2023. 6. 13.
판 결 선 고 2023. 7. 11.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18.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60,641,28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641,28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 2) 원고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B와 사이에, B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	보증기한	대출과목	보증상대처
1	C	45,000,000	2016. 7. 1.	2019. 6. 28.	일반자금대출	D 은행 토곡지점

- 3) B는 원고로부터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서를 발급받아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대출기관(취급점)	대출일자	대출금액
1	C	45,000,000	D 은행 토곡지점	2016. 7. 1.	50,000,000

나. 신용보증사고 및 구상금 채권의 발생

- 1) 2018. 10. 29.경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1. 21. D은행에 원금 및 이자 합계 40,904,67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위 대위변제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2023. 3. 29. 기준 구상금 채권액은 합계 60,641,282원(미회수 대위변제금 40,896,469원 + 지연손해금 19,720,796원 + 일부 회수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 191원 + 미회수 법적절차비용 23,826원)이다.

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및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

- 1) B의 부친인 E은 2019. 10. 18. 사망하였다. 피고는 E의 사망 당시 배우자이고, F은 B과 같이 전 배우자 소생 자녀이다.
- 2) E의 사망 당시 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창원시 소재 임야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 지분’이라 한다)이 있었다.
- 3) F이 돈이 급하다고 하자, 피고는 2020. 3.경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B, F은 이에 동의하였다. 또한, 피고와 B, F은 피고가 봉안당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이 사건 임야지분을 단독 이전받는 것에 대하여도 합의하였다.
- 4) 피고는 2020. 3.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18.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0. 3. 16. F의 계좌 및 B이 지정한 계좌로 각 41,468,457원¹⁾을 송금하였다.
- 5) 이 사건 분할협의 무렵 B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 이외에 1억 5,400만 원 정도인 부산 해운대구 G건물 H호를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5억 2,1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서 채무초과 상태였다.
- 6) 피고는 2021. 8.경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2,8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21. 12. 2. 그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7호증, 을 제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생긴 금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원고 등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B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는 정당한 매매대가가 지급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B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B이 지정한 계좌로 41,468,457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사실이나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포기한 상속지분에 대하여 정당한 매매대가가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 역시 사해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이 B의 유일한 적극재산은 아니었더라도 B이 채무초과 상태였던 이상 사해행위 성립 여부는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라 함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고,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와 B의 인적관계, 피고의 주장 자체로도 B이 돈이 급했다고 하는 등 그 자력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반복하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가액배상은 ①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③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의 각 범위 내에서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지분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은 65,142,857원(시세 2억 2,800만 원 × B 지분 2/7) 정도이고, 이는 원고의 구상금채권액인 60,641,282원보다 다액이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은 위 구상금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60,641,28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0,641,28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 모두 인용

판사 정왕현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 해운대구 [도로명 주소] 부산 해운대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9층 공동주택(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84.90㎡

대지권의 표시

토지권의 표시: 부산 해운대구 대 5541㎡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554100분의 3692

--- 이 상 ---

1) 1억 5,000만 원에 법정상속분률 2/7를 곱한 금액인 42,857,143원에서 취·등록세 부담액 1,388,686원을 뺀 돈이다.